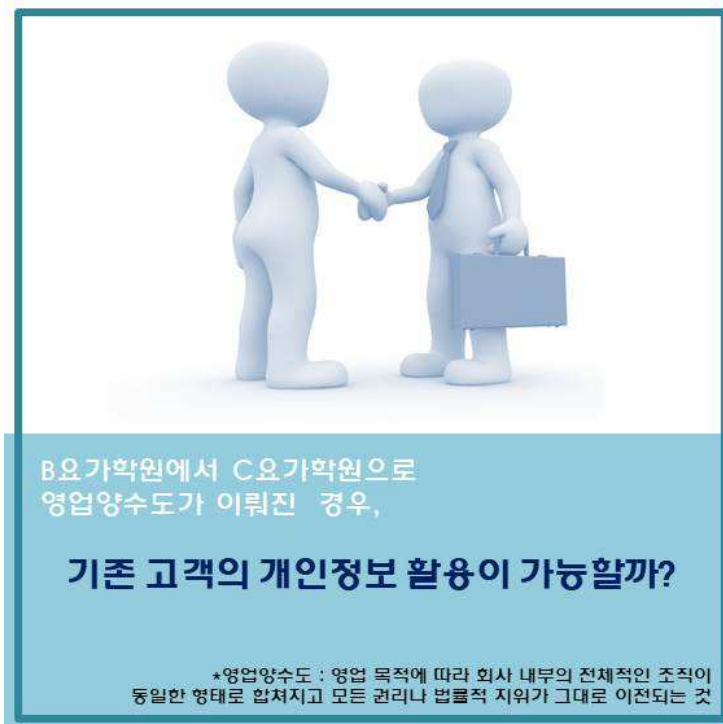




[영업양수도가 이뤄진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이 가능할까]

고객A는 2009년 B요가학원에 가입하였는데, B요가학원이 2017. 5.경 요가업을 운영 하는 C요가학원과 ‘영업권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A를 포함한 기존 회원정보를 이전하였다. 이때 C요가학원은 B요가학원으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이전받지는 않았다. B요가학원은 2017. 6. 1. 회원들에게 B요가학원이 C요가학원으로 바뀌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C요가학원은 이후 고객A에게 홍보문자를 50회 이상 지속적으로 발송하였고, 이 중 2번은 수신거부 연락처 중 한자리를 잘못 표기하여 고객A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즉시 수신거부하지 못하였다. 이후 고객A는 2차례에 걸쳐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그 후에도 재차 홍보문자를 수신하게 되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여부

고객A가 B요가학원에 가입할 당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이었고, 이 당시 처리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C요가학원으로 개인정보 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인 2017. 5.경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이전 과정이나 그 이후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B요가학원의 의무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는 영업양도인인 B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영업양수인인 C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3) C요가학원의 과실

과실로 수신거부 연락처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 ‘어떠한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이든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C요가학원은 고객A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객A의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홍보문자를 발송한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고객A에 대한 위자료배상책임도 발생하게 된다.

사안의 경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나, 이렇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승계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변호사/의사

TEL. 02 565 9801

E-mail. jmhong@lkpartner.co.kr